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4.1.1 ~ 2024.12.31)

2025년 6월 17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대표이사 제임스 오스키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목차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1
1. 지배구조 일반	1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1
나. 지배구조 현황	12
(1) 조직도	12
(2) 지배구조의 특징.....	13
(3) 지배구조 현황(요약)	14
다. 관련 규정.....	15
2. 이사회	16
가. 역할(권한과 책임).....	16
(1) 총괄	16
(2) 구체적 역할	16
나. 구성(이사)	20
(1) 총괄	20
(2) 구성원	21
다. 활동내역 및 평가.....	23
(1) 활동내역 개요	23
(2) 회의 개최내역.....	23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32

(1) 이사회 평가.....	32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33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33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4
가. 역할 (권한과 책임)	34
나.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35
다. 선임기준.....	36
(1) 후보 자격요건	36
(2) 후보 추천 절차.....	36
라. 활동내역 및 평가.....	37
(1) 활동내역 개요	37
(2) 회의 개최내역	37
(3) 평가.....	39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39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39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	40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46
가. 사외이사 활동 내역.....	46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 내용.....	46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47



나.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48
(1) 사외이사 정요진.....	48
(2) 사외이사 안톤 솔츠.....	50
(3) 사외이사 임건신.....	51
다.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52
(1) 사외이사 정요진.....	52
(2) 사외이사 안톤 솔츠.....	53
(3) 사외이사 임건신.....	54
라. 사외이사 교육·연수.....	55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55
바. 임원책임배상보험 현황.....	55
사. 사외이사 평가.....	56
(1) 평가 개요.....	56
(2) 내부평가.....	56
(3) 외부평가.....	57
아.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58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58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58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58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8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59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59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60
(1) 일반	60
(2) 비상계획	60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60
(1) 소극적 자격요건	60
(2) 적극적 자격요건	61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61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61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61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61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61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62
바. 이사회외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62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63
6. 감사위원회	63
가. 역할(권한과 책무)	63
(1) 총괄	63
(2) 구체적 역할	64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65
(1) 총괄	65
(2) 구성원	65
다. 활동내역 및 평가	65
(1) 활동내역 개요	65
(2) 회의 개최내역	66
(3) 평가	69
라. 감사보조조직 등	69
7. 리스크관리위원회	70
가. 역할(권한과 책무)	70
(1) 총괄	70
(2) 구체적 역할	71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72
(1) 총괄	72
(2) 구성원	72
다. 활동내역 및 평가	73
(1) 활동내역 개요	73
(2) 회의 개최내역	73
(3) 평가	75
8. 내부통제위원회	75

가. 역할(권한과 책무)	75
(1) 총괄	75
(2) 구체적 역할	75
나. 구성(내부통제위원회 위원)	76
(1) 총괄	76
(2) 구성원	77
다. 활동내역 및 평가.....	77
(1) 활동내역 개요	77
(2) 회의 개최내역	77
(3) 평가.....	78
라. 보조조직 등.....	78
9. 보수위원회.....	78
10.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79
11.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79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80
1. 보수위원회.....	80
가. 총괄.....	80
나. 구성.....	80
(1) 총괄	80
(2) 구성원	81

다. 권한과 책임.....	81
(1) 총괄.....	81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81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82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성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82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82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82
(7)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82
(8)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83
라. 활동내역 및 평가.....	83
(1) 의사결정 절차.....	83
(2) 활동내역 개요.....	84
(3) 회의 개최 내역.....	84
(4) 평가.....	86
2. 보수체계.....	86
가. 주요사항.....	86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86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87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 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88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89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90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90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90
나. 보수 세부사항.....	90
(1) 임직원 총보수.....	90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91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91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91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92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92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92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93
(6) 이연보수의 조정.....	93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94
[첨부 1] 정관.....	95
[첨부 2] 지배구조 내부규범.....	111
[첨부 3] 이사회 규정.....	126



[첨부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131
[붙임 1] 임원 선임 심사표	135
[첨부 5] 감사위원회 규정	143
[첨부 6] 위험관리기준(위험관리위원회규정)	151
[첨부 7] 보수위원회 규정	158
[첨부 8]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161
[첨부 9] 중임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 보고서	164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첫째,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는 1/2을 이상을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4년말 기준, 이사회는 60%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24년말 기준 이사회는 경영분야 2명, 재무 및 회계분야 3명 으로 구성)하여 특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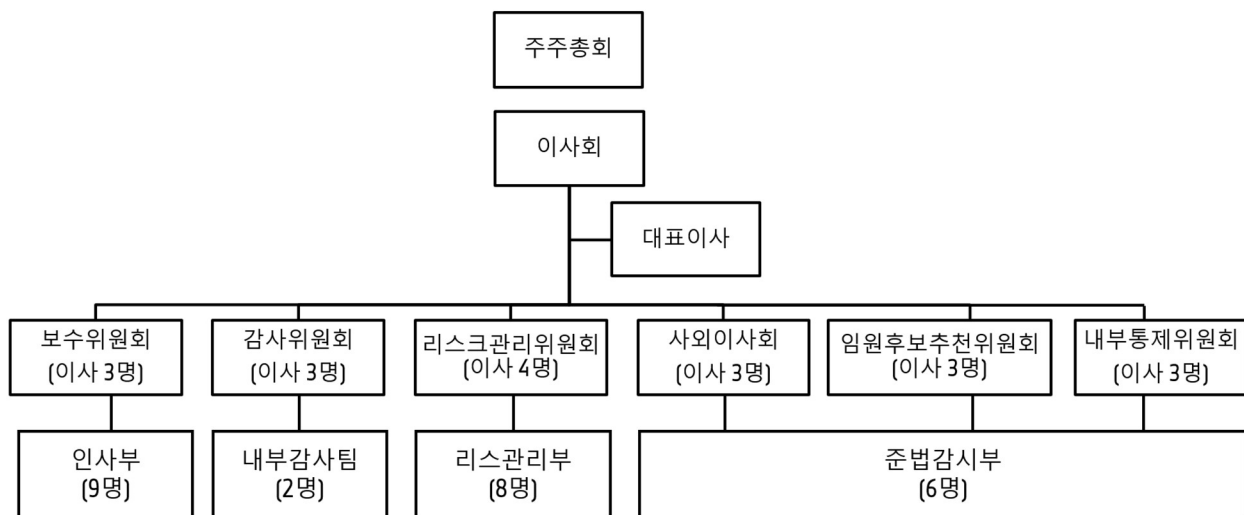
배경 · 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 · 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https://www.bmwf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2024년 12월말 기준)

구분	사내이사	사외이사
보수위원회	1	2
감사위원회	-	3
리스크관리위원회	1	3
사외이사회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2
내부통제위원회	1	2

(2) 지배구조의 특징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2024년말 기준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은 각각 3명, 60% 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사회의 구성) 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의 5개의 위원회 및 사외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이사회의 기능 중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일부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해당 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임원(사외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최고경영자),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며, 사외이사회는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로부터 독립하여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회사의 경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감독을수행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보수위원회는 임직원의 보상지급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 방안 마련 등과 같은 사항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의장 이름 (상임/사외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경영 전반의 주요 사안에 대한 최고 의사 결정	3/5	제임스 오스키 (상임)	정관, 이사회 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 임원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2/3	정요진 (비상임/사외)	정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 업무집행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의 적정성 감사 - 재무재표의 승인 - 외부 감사인 선정	3/3	임건신 (비상임/사외)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	-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3/4	프란츠 안톤 펠릭스 솔츠(이하 "안톤 솔츠") (비상임/사외)	정관, 위험관리기준
보수위원회	- 보수정책 및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승인 -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승인 -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승인 - 변동보상 대상 임직원의 보수 및 지급 방식의 결정	2/3	정요진 (비상임/사외)	정관, 보수위원회 규정
사외이사회	-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로부터 독립하여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	3/3	정요진 (비상임/사외)	지배구조 내부규범

	나, 회사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			
내부통제위원회	-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2/3	임건신 (비상임/사외)	정관,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지배구조내부규범
- 첨부3. 이사회규정
- 첨부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첨부5.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첨부6. 위험관리기준(위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 첨부7.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 첨부8.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규정
- 첨부9. 중임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 보고서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이사회규정 제3조(권한))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을 심의하고 승인합니다.

2024년의 경영 목표는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보완과정을 거쳐 2024년 3월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의 경영계획(안)은 2025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 정관변경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규정 제10조(부의사항), 정관 제33조(부의사항)). 2024년도 정관 변경은 2024년 9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및 임시 이사회에서 변경된 것이 최종으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안건	주요 개정 내용	변경 목적
2024.9.26 임시 주주총회	정관 개정승인의 건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신고 관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의 신설 및 당사는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함.
2024.9.26 임시 이사회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 (관련 규정: 정관 제33조(부의사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의 심의·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

예산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경영계획에 포함되어 심의·의결하며,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과 관련해서도 이사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2025년 경영계획(경영목표 등) 및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은 2024년 3월 개최할 정기 이사회에서 승인할 예정입니다.

(라)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 제10조(부의사항)).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및 주요 경영진의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 하였으며, 1명의 사외이사 임기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재선임 및 선임 승인, 이사회 이사 재선임)에 관련된 결의를 통하여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상기 내용 외에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과, 관련된 조직의 중요한 변경은 없었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 · 평가

당사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임직원의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으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3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자구 수정 등을 위해 당사 내부통제기준을 개정 하였으며, 2024년 6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여신금융업권 표준 내부통제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을 위해 당사 내부통제기준을 개정 하였습니다.

당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체계 ·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에 대한 보고를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2023년도 내부통제 실태점검보고는 2024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 규정에 의거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회사의 리스크 정책 및 리스크관리 관련 제반 업무집행에 대하여 관리 · 감독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중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 기준 수립 · 평가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2024년 3월 7일 임시이사회	- 내부회계관리의 운영실태 보고 - 내부회계관리의 운영평가 보고 - 내부통제기준 개정 승인의 건
2024년 3월 28일 정기이사회	- 2023년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평가 보고 - 2023년 준법감시인의 자금세탁방지 활동 보고의 건
2024년 6월 20일 정기이사회	- 2024년 내부통제정기점검결과 보고의 건 - 리스크 관리 기준 개정 승인의 건 -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이사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 내부통제기준 개정 승인의 건
2024년 9월 26일 정기이사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승인의 건 - 채무조정내부기준 제정 승인의 건 - 이사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내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내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환경 및 제도에 따라 이를 상시 점검하고 보완합니다. 또한 지배구조의 원칙과 정책에 따른 이사회의 활동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이사회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대주주와의 거래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경우 이해상충의 관계를 파악·평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 주요주주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규정에서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 2024년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 관련하여 총 4건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계열사간의 차입금 승인 등). 이사회가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거래를 보류시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해상충의 소지가 해소되었을 때 다시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지도합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이사회의 총원수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제한됩니다(정관 제 23조(이사의 수)). 최소 인원수를 3명으로 규정한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수가 3명 미만인 경우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대 인원수를 7명으로 규정한 것은, 이사의 수가 8명 이상인 경우 이사 간 의견 수렴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이사회는 모두 5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9월 정기이사회에서 1명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에 따라 재선임 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모두 각각 3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 재임기간이 6년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이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

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금융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 윤리의식, 공익성 및 건전 경영의 의지 등 다양한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현재 이사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경영분야 2명, 재무 및 회계분야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는 경영분야 전문가(2019년부터 현재까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의 대표이사)인 제임스 오스키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정 요진 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재선임 하였습니다.

(2) 구성원

2024년 말 기준, 당사 이사회의 구성원은 총 5명이며, 이사회 의장은 제임스 오스키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사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2024년 말 현재 이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비)상 임/ 사외	직위	주요 경력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재임 기간(개 월)	담당위원회*
제임스 오스키	상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임추위 위원, 내부통제위원 회 위원	BMW Automotive Finance China, CFO, CRO	2019년 12월 1일, 2025년 11월 30일	60	이사회 의장, 임추위, 내부 통제위원회
틸 헤르만	상임	사내(재무)이 사, 리스크위* 위원, 보수위* 위원	BMW Bank Austria, CFO	2023년 8월 01일, 2026년 7월 31일	16	리스크위, 보수위
정요진	비상임 /사외	감사위* 위원, 리스크위 위원, 임추위 위원장, 보수위 위원장, 사외이사회 위 원장	현, 서울기독대학 교 석좌교수	2021년 9월 29일, 2027년 9월 26일	39	감사위, 리스크위, 임추위, 보수위, 사외이사회
안톤 솔츠	비상임 /사외	감사위 위원, 리 스크위 위원장, 보수위 위원, 사 외이사회 위원, 내부통제위원 회 위원	현, Korea-consult	2022년 8월 25일, 2025년 8월 23일	28	감사위, 리스크위, 보수위, 사외이사회, 내부통제위 원회
임건신	비상임 /사외	감사위 위원장, 리스크위 위원, 임추위 위원, 사 외이사회 위원, 내부통제위원 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경 영학과 교수	2022년 8월 25일, 2025년 8월 23일	28	감사위, 리스크위, 임추위, 사외이사회, 내부통제위 원회

* 감사위 : 감사위원회, 임추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위 :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 : 보
수위원회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총 8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100%입니다.

당사는 2015년 10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동년 10월 이사회에서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영 투명성 제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4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 : '24.02.05(10:15~11:00)

[안건 통지일 : '24.01.22]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제임스 오스키	틸 헤르만	안톤 솔츠	정요진	임건신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2023 년도 감사 전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24년도 제2차 임시 이사회 : '24.03.07(10:50~11:50)

[안건 통지일 : '24.02.22]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제임스	틸 헤르만	안톤	정요진	임건신	-



	오스키		솔츠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내부회계관리운영실 태 보고			-			-
나. 내부회계관리 운영 평가 보고			-			-
다. 보수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			-
라. 감사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			-
마. 감사위원회의 감사 보고서 제출의 건						
바. 이사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보고의 건						
사.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보고의 건						
아. 사외이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의 건						
자. 2023년 신용정보보호관리인 활동 보고의 건			-			-
4. 의결 안건						
가. 계열사 간 신규 차입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금융기관 차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지배구조연차보고서 (보수연차보고서 포함) 공시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내부통제기준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24년도 제3차 임시 이사회 : '24.03.28(10:00~10:10)

[안건 통지일 : '24.03.14]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제임스 오스키	틸 헤르만	안톤 솔츠	정요진	임건신	
1. 이사 성명	제임스 오스키	틸 헤르만	안톤 솔츠	정요진	임건신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	-	-	-	-	-

(라) 제2024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 : '24.03.28(11:20~12:00)

[안건 통지일 : '24.03.14]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제임스 오스키	틸 헤르만	안톤 솔츠	정요진	임건신	
1. 이사 성명	제임스 오스키	틸 헤르만	안톤 솔츠	정요진	임건신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
나. 감사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
다. 보수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
라. 2023년도 영업 및 재무현황 보고의 건	-					-
마. 2023년도 성과 보고의 건	-					-
바. 감사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 감사결과 보고의 건	-					-
사. 감사위원회의 내	-					-



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보고의 건						
아.2023년 감사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
자.2023년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평가 보고		-				-
차.2023년 준법감시인의 자금세탁방지 활동 보고의 건		-				-
카.2024년 이사 보수 한도 보고의 건		-				-
4. 의결 안건						
가.2023년도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24년 경영 목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2024년 계열회사와의 신용 공여한도 등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2024년 계열사간 신규 차입금, 차입금 롤오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2024년 ABS 발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금융기관 차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2024년 보수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24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 : '24.06.20(11:10~11:50)

[안건 통지일 : '24.06.05]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제임스 오스키	틸 헤르만	안톤 솔츠	정요진	임건신	
1. 이사 성명	제임스 오스키	틸 헤르만	안톤 솔츠	정요진	임건신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보고			-			-
나. 감사위원회 활동 보고			-			-
다. 2024 년 1 사분기영업 및 재무현황 보고의 건			-			-
라. 사모 ABS 발행 보고의 건			-			-
마.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사항 보고의 건			-			-
바. 2024 년 내부통제정기점검결과 보고의 건			-			-
사. 2024 년 금융소비자보호 연간 계획 현황 보고의 건			-			-
아. 방문판매업 휴업 신고 완료 보고의 건			-			-
4. 의결안건						
가. 금융기관의 대규모 차입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 년 계열사 간 신규 차입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모 ABS 발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리스크 관리 기준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이사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내부통제기준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2024년도 제4차 임시 이사회 : '24.09.26(09:40~09:50)

[안건 통지일 : '24.09.10]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제임스 오스키	틸 헤르만	안톤 솔츠	정요진	임건신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
4. 의결안건						
가. 정관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2024년도 제3차 정기 이사회 : '24.09.26(11:40~12:20)

[안건 통지일 : '24.09.10]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제임스 오스키	틸 헤르만	안톤 솔츠	정요진	임건신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감사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

나.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
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
라. 보수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
마. 2024 년 2 사분기 영업 및 재무현황 보고의 건		-				-
바. 공모 ABS 발행 조건 보고의 건		-				-
사. 지배구조연차보고서 수정 공시 보고의 건		-				-
4. 의결안건						
가. 금융기관의 대규모 차입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외이사 재선임 승인의 건 (정요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선임 사외이사 재선임 승인의 건 (정요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재선임 승인의 건 (정요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보수위원회위원장 재선임 승인의 건 (정요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재선임 승인의 건 (정요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 승인의 건 (정요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부산 기장 사무소 설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내부통제위원회 설립 및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타.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파. 채무조정내부기준 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하. 수원 지점 표시 변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가. 이사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제2024년도 제4차 정기 이사회 : '24.11.21(11:20~12:20)

[안건 통지일 : '24.11.06]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제임스 오스키	틸 헤르만	안톤 솔츠	정요진	임건신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감사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
나.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
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
라. 보수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

마. 2024 년 3 분기 영업 및 재무현황 보고의 건	-	-
바. 금융소비자보호 핵심 주제 보고의 건	-	-
사. 2024 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자체평가 결과 보고의 건	-	-
아. 2024 년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검사 결과 보고의 건	-	-

4. 의결안건

가. 신규 및 롤오버 계열사 차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금융기관의 대규모 신용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5 년 경영 목표 및 예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5 년 금융소비자보호 연간 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5 년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성과평가 기준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이사회 의장 임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선임 사외 이사 임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 및 절차에 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룹에 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사외 이사 및 감사 위원회 위원 후보자 그룹에 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이사회 구성, 운영실태, 활동내역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당사의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제반 법령 상 기준, 지침을 고려하여 2024년 직무평가 결과를 2025년 3월 임시 이사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1) 이사회 평가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사결정기관 및 경영진의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해에 전년도 이사회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 수의 적정성, 이사들의 업무수행 자격 수준, 이사회 정기적 개최 여부, 구성원의 회의참석도, 이사회 운영 충실성, 경영성과 점검여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 등을 위한 노력여부, 이사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사전 안전제공 수준 등이 포함 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이사회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이사회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당사의 주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대한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서면조사로 이뤄지고,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오스키 대표이사는 다년간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서 재직하면서 축적한 회사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과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24년 11월 정기 이사회에서 1년의 임기로 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될 경우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당사는 2024년 11월 정기 이사회에서 정요진 사외이사를 선임사외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정요진 사외이사는 경영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무학교수, 한화자산운용(주) 사외이사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을 통한 경험으로 회사 관련 이슈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사외이사들이 경영진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권한과 책임)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정관 제24조의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에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임원 후보군을 발굴하여 관련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며 이사회 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되어,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압축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사 대표이사 자격요건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 당사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및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세부적으로 정한 자격요건이 있으며,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은 아래 세 가지 항목입니다.

- 회사의 경영 목표와 비전 공유여부,
-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 보유여부,

-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 추구

또한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내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은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회사의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은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추천, 대표이사 후보군,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군을 탐색 관리하고 후보군 관리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임원 후보를 추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명(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現 직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주요 경력
정요진	사외	위원장	2021년 9월 9일 (2027년 9월 26일)	한국기독교대학교 석좌교수
제임스	상임	위원(대표이사)	2019년 11월 30일	BMW Automotive Finance China

오스키			(2025년11월30일)	CFO, CRO
임건신	사외	위원	2022년 7월 5일 (2025년 8월 23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가) 소극적 자격 요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의 임원 후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 요건

1)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는 회사 업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건전 경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2)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함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되는 후보자들은 독립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및 책임의식 등을 겸비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후보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만료 등 결원 발생 시 임기만료 임원을 포함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활동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재선임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기 절차를 통해 선정된 최종후보에 대해 법령상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단일최대주주와 외부 자문기관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2024년 총 3차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추천한 1명의 사외이사 및 이사회 위원 후보는 기존 사외이사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선임 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4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4.09.26(09:30~09:40)

[안건 통지일 : '24.09.1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요진*	임건신	제임스 오스키	-
2. 참석 여부	불참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
4.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 및 이사회 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승인의 건: 정요진	-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승인의 건: 정요진	-	찬성	찬성	가결

*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불참하였음.

(나) 제 2024 년도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4.09.26(11:30~11:40)

[안건 통지일 : '24.09.1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요진	임건신	제임스 오스키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
4. 의결안건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재선임 승인의 건: 정요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 2024 년도 제 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4.11.21(10:30~10:50)

[안건 통지일 : '24.11.06]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요진	임건신	제임스 오스키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
4. 의결안건				
가. 최고경영자 후보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 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3) 평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의 목적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다음해에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수의 적정성,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이해도 및 수행도, 위원회 개최빈도, 위원회 운영 충실성, 사전안건 제공 수준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이사회 운영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2024년 9월 2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정요진

상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의 경력 등 자격요건 검증을 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기존 위원장이었던 정요진이사는 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불참)의 찬성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상기 후보자는 2024년 09월 2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2027년 09월 26일을 임기 만료일로 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1) 후보자 성명: 정요진

2) 출생연도: 1952년

3) 출신학교

- 경영학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 경제학 석사, Western Illinois University,
-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4) 주요경력

- 2024.03 ~ 현재, 석좌교수, 서울기독교대학교
- 2021.09 ~ 2024 .02 석좌교수, 강서대학교
- 2016 ~ 2021: 한화자산운용 사외이사

(나) 후보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 전원(당사자 제외)이 동 후보를 제안하였습니다.

2) 후보자와의 관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공식 기구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입니다.

(다) 후보자 추천이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정요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는 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사외이사직 및 감사위원직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오랜 기간동안 대학

의 재무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경영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하므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경영진에게 올바른 경영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 경로

정요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는 2024년 9월 개최된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2021년 9월 ~ 2024년 9월 기간 내 당사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재직하였습니다.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령상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회사 이사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의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당사 계열 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임 중인지 여부를 체크토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고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여부

㉔ 전문성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기준을 참고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전문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요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는 경영.경제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3년간 회사의 사외이사직 및 감사위원직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므로 후보자는 동 항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㉕ 직무공정성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직무공정성에 대하여 검토 및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요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는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으며, 주주 및 소비자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㉖ 윤리성, 책임성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윤리성, 책임성에 대하여 검토 및 판단하고 있

습니다. 정요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는 경영.경제전문가로서의 윤리 등 윤리의식과 책임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㉔ 충실성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후보의 충실성에 대하여 검토 및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요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는 당사의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본인 소명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후보자에 대하여 인적, 경력사항 확인을 통하여 후보자의 제반 법령상 결격사유를 검증하고 있으며,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등을 통해 본인 소명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 결과

정요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에 대한 후보 추천을 위해 2024년 9월 26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임원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의되며 재적위원 3인 중 2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인 정요진 이사는 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의결 정족수에서 제외함)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FY2024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1명이며 이 중 1명이 연임하였으며 내.외부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등 출석율	평가 여부
정요진	2021.09.29 ~ 2024.09.28	여	100%	충실성, 윤리성, 책임성, 전문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정요진 사외이사는 경영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무학교수, 한화자산운용(주) 사외이사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을 통한 경험으로 회사 관련 이슈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사외이사들이 경영진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재임기간 및 참석율은 FY2024 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임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정요진 사외이사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기독교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회사들의 경영상황을 감시하고 회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지원함과 동시에 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024년 중 회사의 주요 이슈 사항으로는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ABS 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 안건

을 승인하였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이에 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정요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9: 사외이사 검토보고서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적극적 요건을 반영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원칙에 따라 관리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관리 및 후보검증 관련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2024년에는 11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해 논의하였습니다.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다양한 배경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다양한 경로의 추천으로 구성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후보군 4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분야별 구성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경영	금융	재무/회계	기타(엔지니어링)	총원
명수(명)	1	1	1	1	4
비율(%)	25%	25%	25%	25%	100%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 관련 보고한 내용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4년 11월 정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추천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하였습니다. 이사회에 보고된 후보군 내역은 위의 후보군 현황 항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 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 내용

구분	회의일시 및 안건 내용
(가) 이사회	(제1절) 2. 이사회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절)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다) 감사위원회	(제1절) 6. 감사위원회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제1절) 7. 리스크관리위원회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마) 보수위원회	(제2절) 1. 보수위원회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3) 회의 개최내역 참조
(바) 내부통제위원회	(제1절) 8. 내부통제위원회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가) 사외이사 정요진

사외이사 정요진은 2024년 재임 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에 참석하였고, 2024년 간 개최된 이사회 내 위원회 전체 회의에 위원장 혹은 위원으로서 참석하여 참석률은 100%입니다 (감사위원회 6회, 리스크관리위원회 4회, 보수위원회 4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또한 사전에 제공한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 및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판단과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정요진은 보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회 위원장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재임 기간 내 총 약 12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안톤 솔츠

사외이사 안톤 솔츠는 2024년 재임 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에 참석하였고, 2024년 간 개최된 이사회 내 위원회 전체 회의에 위원장(리스크관리위원회) 혹은 위원으로서 참석하여 참석률은 100%입니다. (감사위원회 6회, 리스크관리위원회 4회, 보수위원회 4회, 내부통제위원회 1회)

또한 사전에 제공한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 및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판단과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안톤 솔츠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재임 기간 내 총 약 12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임건신

사외이사 임건신은 2024년 재임 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에 참석하였고, 2024년 간 개최된 이사회 내 위원회 전체 회의에 위원장(감사위원회) 혹은 위원으로서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6회, 리스크관리위원회 4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내부통제위원회 1회)

또한 사전에 제공한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 및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판단과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임건신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재임 기간 내 총 약 1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 1. 요약 (2024.01.01 ~ 2024.12.31)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실적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시간
정요진	8	8	6	6	4	4	3	3	3	2	-	-	12:35
안톤 솔츠	8	8	6	6	4	4	3	3	-	-	1	1	12:15
임건신	8	8	6	6	4	4	-	-	3	3	1	1	11:25

나.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정요진

(가) 소극적 자격요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

행령 제7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합니다.

정요진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타 상기 법률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며, 2024년 말 현재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 적극적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요진 사외이사는 한화자산운용(주) 사외이사 등 금융회사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 재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North Dakota대학 등에서 5년이상 재무학 교수로서 재직하였으므로 재무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2024년 말 현재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무공정성, 윤리성과 책임성, 충실성에 대하여도 검증하였으며, 2024년 말 현재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 5 조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 6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력 참조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등 고려
라. 충실성	충족	회의 참석 등 이사회활동 내역 고려

(2) 사외이사 안톤 솔츠

(가) 소극적 자격요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합니다.

안톤 솔츠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타 상기 법률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며, 2024년 말 현재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 적극적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톤 솔츠 사외이사는 코리아컨설팅 등 경영컨설팅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함에 따라 경영에 대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2024년말 현재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무공정성, 윤리성과 책임성, 충실성에 대하여도 검증하였으며, 2024년말 현재 자격요건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 5 조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 6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력 참조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등 고려
라. 충실성	충족	회의 참석 등 이사회활동 내역 고려

(3) 사외이사 임건신

(가) 소극적 자격요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합니다.

임건신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타 상기 법률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며, 2024년 말 현재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 적극적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건신 사외이사는 회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영학과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함에 따라 회계 및 MIS분야의 전문가이며, 2024년 말 현재 동 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무공정성, 윤리성과 책임성, 충실성에 대하여도 검증하였으며, 2024년 말 현재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 5 조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 6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력 참조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등 고려
라. 충실성	충족	회의 참석 등 이사회활동 내역 고려

다.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1) 사외이사 정요진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정요진은 2024년 참석대상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전체 주주가치 제고 및 금융소비자 이익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급	12,000,000 원	월 기본급 1,000,000 x 12회
	상여금	-	-
	기타 수당	15,000,000 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가 수당
나. 보수 이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12,000,000 원	월 1,000,000 원 x 12 회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2) 사외이사 안톤 솔츠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안톤 솔츠는 2024년 참석대상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전체 주주가치 제고 및 금융소비자 이익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급	12,000,000 원	월 기본급 1,000,000 x 12 회
	상여금	-	-
	기타 수당	15,000,000 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가 수당
나. 보수 이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12,000,000 원	월 1,000,000 원 x 12 회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3) 사외이사 임건신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임건신은 2024년 참석대상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전체 주주가치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급	12,000,000 원	월 기본급 1,000,000 x 12회
	상여금	-	-
	기타 수당	15,000,000 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가 수당
나. 보수 이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12,000,000 원	월 1,000,000 원 x 12 회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의제공	-	-

라. 사외이사 교육.연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2024년 회사 및 그룹의 영업현황에 정보를 제공하였고 법정교육인 자금세탁방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사 현황 및 업계 동향에 대하여 주기적인 자료 제공 및 브리핑을 통해 사외이사의 회사 및 업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성명	임건신	정요진	안톤 솔츠
1. 교육 연수 실시내역			
가.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2024년6월3일 ~ 2024년6월30일 내용: 자금세탁방지(온라인)		일시: 2024년6월3일 ~ 2024년7월11일 내용: 자금세탁방지(온라인)
나.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	6 시간	6 시간	3.5 시간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사외이사가 재임 중인 회사에 기부한 사항은 없습니다.

바. 임원책임배상보험 현황

- 가입사: 알리안츠손해보험
- 보상한도: 총 62.5억원(사고당/누적)

- 사외이사의 자기부담금:

회사업무 손해: 1,492,537,313 원

개인업무 손해: 37,313,433 원

- 보험료: 9,375,000 원

- 주요배상범위: 임원의 실수로 발생한 회사상 배상책임, 임원이 실수한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

- 주요 면책범위: 의도적 사기행위 및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라 총 재직기간 6년미만의 범위 내에서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6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활동내역 등에 대해 매년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1조).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 평가 대상: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사외이사

- 평가 주체: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 평가 기준: 평가기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기본역할(사외이사로서 경영참여 및 의사결정), 전문성(선임시 고려된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등), 공정성(공정한 절차 준수), 이해도(경영환경 및 회사, 개별 의안에 대한이해), 충실성(사외이사 활동을 위한 시간 배분), 참석율(평가대상 기간동안 이사회 참석율)에 대해 충족 여부 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 절차: 평가는 각 위원회 활동내용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위 평가주체 · 기준 · 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 직전 연도말에 이사회가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의 전반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2024년도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사외이사 평가항목 기준은 기본역할, 전문성, 공정성, 이해도, 충실성, 참석율이며, 평가결과 모든 항목에서 우수하게 평가 되었습니다.

1)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성명	평가결과						개선방안
	기본역할	전문성	공정성	이해도	충실성	참석율	
정요진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안톤 솔츠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임건신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3) 외부평가

현재 사외이사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 시 별도로 검토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아.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지 못할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2024년 11월 정요진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재선임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준법감시부(임원 1명, 부원 5명)에서 사외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실무지원, 기타 사외이사 활동에 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 체결한 계약 내역은 없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사임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주요 경력
정요진	21.09.29.	27.09.26	39개월	감사위(21.09월 ~ 현재)	사외	서울기독대학

				리스크관리위(21.09월 ~ 현재) 임추위(21.09월 ~ 현재) 보수위(21.09월 ~ 현재) 사외이사회(21.09월 ~ 현재)	이사	교 석좌교수
임건신	'22.08.25	'25.08.23	28개월	감사위(22.08월 ~ 현재) 리스크관리위(22.08월 ~ 현재) 임추위(22.08월 ~ 현재) 사외이사회(22.08 월 ~ 현재) 내부통제위원회(22.08 월 ~ 현재)	사외 이사	연세대학교 교 수
안톤 솔츠	'22.08.25	'25.08.23	28개월	감사위(22.08월 ~ 현재) 리스크관리위(22.08월 ~ 현재) 보수위(22.08월 ~ 현재) 사외이사회(22.08월 ~ 현재) 내부통제위원회(22.08월 ~ 현재)	사외 이사	Korea-Consult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하고, 법령상 임원 자격요건에 해당하거나 유고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최고경영자가 해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영승계 절차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 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된 규정은 최고경영자의 선임 및 승계원칙,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시점 및 종료, 후보군 선정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을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장부터 제20장에 이르기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의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기본 자격요건으로 대표이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그룹 및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가 최고경영자가 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모회사인 BMW Group 에서 추천을 받아 최고 경영자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합니다.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의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로 선임하며,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로 승인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최고경영자 유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9조(비상상황)에 의거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비상승계 절차를 개시하며, 최고경영자의 직무대행자는 상임 재무이사가 되게 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자격요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41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최고

경영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소극적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적극적 자격요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서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에 부서장 이상의 지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나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일 것을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2024년 간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승계는 없었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2024년 간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승계는 없었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내규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후보군 선발 및 관리,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2024년 말 기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총 2명의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 지원부서인 인사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평가 및 검증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정기 이사회에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원의 선임요건, 금융지식과 실무경험, 비전공유, 공익성과 건전경영, 기타 관련 법규요건을 평가한 결과 관련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보고일자: 2024년 11월 21일 정기 이사회)

구분		후보군 수	백분율	기타
내부		-	-	-
외부	금융회사*	2	100%	-
	비금융회사	-	-	-
	공공기관	-	-	-
	기타	-	-	-
합계		2	100%	-

*최고경영자 후보군은 BMW Group 으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군 입니다.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승계계획의 점검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0조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로 인사부를 담당부서로 하고 있으며, 동 부서에서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팀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 외에도 인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는 이해상충 소지가 없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2024년 12월 기준) >

- 부서명: 인사부
- 직원수: 총 9명
- 담당자: 본부장 황윤진 (02-3441-5404)

- 운영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24년 09월 26일	가. 대표이사 후보군 승인관련 지원 나. 2024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군 승인 관련 지원	제 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감사위원회는 2015년 10월 20일 설치되어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 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전문가, 회계 전문가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의 업무집행 감독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 412조).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4년 11월에 외부감사인으로 PWC 삼일회계법인을 선임(2025/26/27년)하는 안건을 승인 하였습니다.

(다) 재무제표 검토 등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고 있으며(상법 제447조의 4) 이렇게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에 제출되어 보고됩니다.

(라) 기타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합니다(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6조).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 위원은 3인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감사위원회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한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직위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임건신	사외	위원장	2022년 8월 25일	2025년 8월 23일
정요진	상임	감사위원	2021년 9월 29일	2027년 9월 26일
안톤 솔츠	사외	감사위원	2022년 8월 25일	2025년 8월 23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감사위원회는 분기당 1 회 이상 개최하며,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 2024년에는 총 6 회의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참석율은 100% 로,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4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24.02.05(09:30~10:15)

[안건 통지일 : '24.01.22]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임건신	안톤 솔츠	정요진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 년도 감사 전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4. 의결안건				
가. 감사헌장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외부감사인 평가 및 선정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24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4.03.07(10:00~10:45)

[안건 통지일 : '24.02.22]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임건신	안톤 솔츠	정요진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 보고의 건	-			-
나. 내부회계관리운영평가 보고의 건	-			-
4. 의결안건				
가. 내부회계평가보고서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연간 내부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24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24.03.28(10:10~10:40)

[안건 통지일 : '24.03.14]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임건신	안톤 솔츠	정요진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감사결과 보고의 건		-		-
나. 자금세탁방지감사결과 보고의 건		-		-
다. 내부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진행내역 업데이트 보고의 건		-		-
라.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제도 평가결과 보고의 건		-		-
마. 2023 년 감사위원회 활동 검토의 건				
바. 주주총회 안건 및 서류 검토				
사. 외부회계감사인의 2023 년도 검토의 건				
4. 의결안건				
가. 2024 년 감사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24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24.06.20(10:30~11:00)

[안건 통지일 : '24.06.05]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임건신	안톤 솔츠	정요진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감사결과 보고의 건		-		-
나. 미결 내부감사 후속조치 업데이트 보고의 건		-		-
다. 외부감사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의 건		-		-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	-	-	-

(마) 제2024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24.09.26(09:50~10:20)

[안건 통지일 : '24.09.1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임건신	안톤 솔츠	정요진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감사 결과 보고의 건		-		-
나. 미결 내부감사 후속 조치 업데이트 보고의 건		-		-
다. 주주총회 안건 및 서류 검토				
4. 의결안건				
의결 안건 없음				

(바) 제2024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 '24.11.21(09:30~10:00)

[안건 통지일 : '24.11.06]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임건신	안톤 솔츠	정요진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감사 결과 보고의 건	-			-
나. 미결 내부 감사 후속 조치 업데이트 보고의 건	-			-
4. 의결안건				
가. 2025/2026/2027 년도 외부 감사인 선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감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전년도의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역에 대한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점검항목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 규모의 적정성, 위원의 전문성, 안건의 적정성 및 적시성, 개최시기의 적정성, 위원회 역할 및 기능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보조 조직으로 내부감사팀(Internal Audit team)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은 일상업무에 대한 직무검사, 검사 계획 수립·실시 및 결과 보고 등 내부검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자	대상	주요 보고 및 지원내용
2024년 2월	감사위원회	감사 전 재무제표 보고
2024년 3월	감사위원회	연간 내부감사계획 보고
2024년 3월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결과 보고, 자금세탁방지 감사결과 보고
2024년 6월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결과 보고
2024년 9월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결과 보고
2024년 11월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결과 보고

내부감사팀 구성원은 팀장 1명, 팀원 1명 포함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감사위원이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리스크 관리 부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전사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회사의 경영활동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인식, 측정 및 평가하고, 이를 회사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리스크와 수익간의 구조를 최적화하며, 경영의 안정성 및 자산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전략을 수립하여 경영활동에 활용하고, 회사의 주요 리스크관련 의사결정 및 리스크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전사 경영목표 및 경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하며, 개별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고 해당조직에 리스크 감소, 회피, 수용 등 대응전략을 수립 및 이행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2024년 말 현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적정투자한도 및 투자에 따른 손실허용한도에 관한 해당사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 관련 내부규정 제정 및 개정 시 이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06월 제2차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서 위험관리기준 개정 승인, 2024년 9월 제3차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금리 및 유동성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승인, 2024년 11월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 관리 전략 가이드라인 개정 승인하였습니다.

(마) 기타

그 외 회사는 리스크 관련 주요 사항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및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공정하게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직위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안톤 솔츠	사외	위원장	'22.08.25	'25.08.23
정요진	사외	위원	'21.09.29	'27.09.26
임건신	사외	위원	'22.08.25	'25.08.23
틸 헤르만	상임	위원	'23.08.01	'26.07.31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24년 총 4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4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4.03.28(09:30~10:00)

[안건 통지일 : '24.03.14]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안톤 솔츠	정요진	임건신	틸 헤르만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4분기 마감을 위한 리스크 관리 보고의 건	-				-
4. 의결안건					
가. 리스크 관리 한도 업데이트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24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4.06.20(10:00~10:30)

[안건 통지일 : '24.06.05]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안톤 솔츠	정요진	임건신	틸 헤르만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1분기 마감을 위한 리스크 관리 보고의 건			-		-
4. 의결안건					
가. 위험 관리기준 개정 승인의 건(리스크 관리방침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24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4.09.26(10:40~11:10)

[안건 통지일 : '24.09.1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안톤 솔츠	정요진	임건신	틸 헤르만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2분기 리스크관리보고의 건			-		-
4. 의결안건					
가. 금리 및 유동성 관리 가이드라인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24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4.11.21(10:00~10:30)

[안건 통지일 : '24.11.06]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안톤 솔츠	정요진	임건신	틸 헤르만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3분기 위험 관리 보고서 보고의 건			-		-
4. 의결안건					



나. 리스크관리 전략과 가이드라인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리스크관리한도 업데이트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이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회사의 위험관리 및 통제를 위한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 전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8. 내부통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내부통제위원회는 전사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시 이를 승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및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건전한 조직문화 및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간이 되는내부통제의 기본 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윤리 강령,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등을 수립 및 개정 승인 함으로써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관련 의사결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에 따른 관리조치·점검

내부통제위원회는 전사의 건전한 내부통제 수립을 위하여 임원이 내부통제 등에 대한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

그 밖에 회사는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고시하는 사항,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을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구성(내부통제위원회 위원)

(1) 총괄

내부통제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및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직위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안톤 솔츠	사외	위원	'22.08.25	'25.08.23
임건신	사외	위원장	'22.08.25	'25.08.23
제임스 오스키	상임	위원	'19.11.30	'25.11.3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내부통제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2024년 9월 26일 최초 설립되어, 2024년 총 1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4년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 : '24.09.26(12:20~12:30)

[안건 통지일 : '24.09.1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임건신	안톤 솔츠	제임스 오스키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
4. 의결안건				
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내부통제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여 건전한 내부통제를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전년도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역에 대한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점검항목에는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원 규모의 적정성, 위원의 전문성, 안건의 적정성 및 적시성, 개최시기의 적정성, 위원회 역할 및 기능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라. 보조조직 등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내부통제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 보조조직으로 준법감시부를 두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 보조조직은 일상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등, 내부통제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 구성원은 본부장 1명, 팀원 5명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 보수위원회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제 1 장 보수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2024년 말 현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 행정지도가 없었습니다.

11.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회사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어 운영 되는지를 관리하며,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에 대하여 운영목적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수의 결정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합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 규정으로 보수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정관 제35조(위원회)를 그 근거로 하여 2022년 3월부터(2021년 말에 회사의 총 자산액이 5조원을 최초로 상회함에 따라) 운영되어 왔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회사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보수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에 의거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여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회사의 보수위원회는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명이 사외이사이며, 정요진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 정요진 이사는 미국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의 재무학교수와 한화자산운용

㈜의 사외이사의 경력을 갖고 있는 금융분야 전문가로서 보수체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보수위원회의 구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정요진*	사외	위원장	'21.09.29	'27.09.26
안톤 솔츠	사외	위원	'22.08.25	'25.08.23
틸 헤르만	상임	위원	'23.08.01	'26.07.31

* '24.09.26 보수위원회를 통해 위원장으로 재선임 하였음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회사 및 관계회사에 자료제출 및 서류의 보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24년도 임원 보수 한도의 결정은 2024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제1차 보수 위원회에서 2024년 임원 보수지급 및 공시에 관한 (보수연차보고서)에 대한 승인 및 보수 대상자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개최 예정인 보수위원회에서 2025년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예정입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24년 3월 7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2023년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 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성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3월 28일에 개최된 2024년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2024년 이사의 보수한도, 임원 보수 체계 및 지급 승인(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회사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본 보고서 '라. (1)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운영 되고 있으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11월 21일 개최된 제4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 하였습니다. 2024년 중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11월 21일 개최된 제4회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임원의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7)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1) 국내: 국내의 모든 사업부에 대해서 동 보수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 해외: 해외법인은 없습니다.

(8)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2024년 3월 개최된 2024년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회사의 임원 5명으로(사외이사, 준법감시임원, 위험관리책임임원,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임원 제외) 변동보수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5 명	대표이사(1 명), 부사장(1 명), 본부장(3 명)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해당사항 없음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정당한 이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위원들에게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위원회 부의안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위원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보수위원회가 총 4회 개최되었으며, 보수위원회 위원장 재선임, 2024년 보수계획, 운영 및 적적성 승인,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에 대한 의사결정방법 및 임원의 보수이연에 대한 안건들을 의결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 내역

(가) 제2024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24.03.07(09:30~10:00)

[안건 통지일: '24.02.22]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요진	안톤 솔츠	틸 헤르만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
4. 의결안건				
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및 공시에 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보수대상 결정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24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24.03.28(11:00~11:20)

[안건 통지일: '24.03.14]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요진	안톤 솔츠	틸 헤르만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
4. 의결안건				
가. 2024 년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가. 2024 년도 보수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24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 '24.09.26(11:10~11:30)

[안건 통지일: '24.09.1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요진	안톤 솔츠	틸 헤르만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
4. 의결안건				
가. 보수위원회 위원장 재선임에 대한 승인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24년도 제4차 보수위원회: '24.11.21(10:50~11:10)

[안건 통지일: '24.11.06]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요진	안톤 솔츠	틸 헤르만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
4. 의결안건				
가. 보수계획, 운영 및 적정성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평가

보수위원회가 2022년에 최초로 설립되었으므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0조(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근거하여, 2024년 중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합니다.

회사 보너스는 회사의 전반적인 성장과 수익성에 대한 보상이며, 평가지표는 세전이익 (Profit before Tax), 이익기여도, 위험조정수익률 (Return On Risk Adjusted Capital) 등이 포함됩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개인 보너스는 개인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개별 핵심 결과 영역 (KRA)의 목표 달성 및 리더십의 두 가지 사항을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성과평가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이하의 단기 결과를 기반합니다. 성과보수는 개인 보너스와 회사 보너스 두 가지로 구성되며 각 50%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회사는 장기성과와 수익성 관련 지표를 중심지표로 설정하여 최종 평가와 연계하고, 위험 연계를 위해 회사의 특성에 맞는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 되지 않은 평가지표의 반영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건전성 지표로 활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량화가 가능한 별도의 비재무적 지표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경기예측 등에 맞게 임원의 성과평가 지표를 조정하여야 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합니다.

-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포함
- 수익성 평가 시 단순한 절대 손익 및 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평가지표를 적용
-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순이익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손익을 제거한 영업이익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성과를 반영
- 재무적 지표 이외에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규 고객수, 고객만족도의 증진, 위험 관리 등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우수 인적 자원의 확보 및 개발 등과 같은 인적 자원 지표 등 비재무적 지표를 활용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원의 성과보수 40%는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성과보수 및 이연지급은 회사가 2021년말 총자산이 5조원을 최초로 상회함에 따라 2022년 성과급(2023년 지급)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 정책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으로 정정되었을 경우 기 지급된 성과보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 부문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변상금액을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에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미확정의 결정기준

지급시점에 성과보수 및 이연성과급을 확정하며, 재무제표의 오류 또는 부정,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 부문과 관련한 손실의 발생 등 조정 및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정 및 환수하게 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 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기본급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연봉은 성과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등)

회사는 성과보수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아서, 전액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회사는 성과보수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면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2024년도 성과보수(2025년 지급 예정)는 성과보수액 중 60%는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3년간 이연 지급합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회사는 성과주의 문화의 정착을 위해 고정급 성격의 기본연봉 외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보상체계는 손익규모 등에 따라 성과급 규모도 증감되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회사는 임금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인사규정 및 보수지급지침, 표준 연봉기준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회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5-3조에 따라 외부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회사는 임직원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 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을 활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회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보수 체계 및 지급 승인(안)과 임원 보수 한도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명, 억원)

구분	임직원보수총액 ^{주(1)}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주(2)} (B)		임직원수 ^{주(3)}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2023년)	151	114	132% ^{주(4)}	204	0.7
당해연도 (2024년)	161	1,458	11%	211	0.8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음.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는 t-1기의 금액임.

주(3) 임직원수는 각 사업년도말 재직자 기준(비상근이사 포함)으로 작성.

주(4) 비영업손실의 일시적 증가(금리 및 환차손 위험헤징위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의 증가에 기인함).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등기임원	미등기임원	팀장	팀원
전년도 (2023년)	보수총액	17.0	11.7	28.1	94.3
	성과보수액	2.8	3.2	5.7	9.8
당해연도 (2024년)	보수총액	19.8	13.0	27.0	101.1
	성과보수액	3.3	3.2	5.9	14.6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기본급	성과보수액	
					이연지급대상
전년도 (2023년)	임원 등	12 주(1)	11.8	6.0	4.7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당해연도 (2024년)	임원 등	11	13.1	6.5	5.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주(1) 연중 중도퇴직자 포함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3 년)	임원 등	6.0	6.0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연도 (2024 년)	임원 등	6.5	6.5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주(1)}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23 년)	임원 등	2.5	2.5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연도 (2024 년)	임원 등*	3.7	3.7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주(1) 이연보수액: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 특정년도 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하였으며, 2021 년 발생과 보수액을 2022 년 상반기 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2022 년말 기준 누적 이연 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3년)	임원 등	2.5	2.5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연도 (2024년)	임원 등	3.7	3.7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연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 기	t-1 기	t-2 기	t-3 기	이전
전년도 (2023년)	임원 등	2.5	1.6	0.9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연도 (2024년)	임원 등	3.7	2.1	1.1	0.5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명,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1)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4)
전년 (2023년)	임원 등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당해연도 (2024년)	임원 등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 (삭감, 환수 등), 간접적 (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 (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 (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3년)	임원 등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당해연도 (2024년)	임원 등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첨부 1] 정관

정 관

제 정 : 2001년 07월 04일
변 경 : 2012년 06월 04일, 2015년 10월 01일, 2016년 09월 01일, 2017년 04월 07일,
2017년 06월 22일, 2017년 12월 11일, 2020년 09월 24일, 2022년 03월 24일,
2024년 09월 26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회사의 명칭

회사의 명칭은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BMW Financial Services Korea Co., Ltd." (이하 "회사"라고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 적

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금융업
2. 시설대여업
3. 신용대출 또는 담보(재고관련 양도담보포함)대출업
4. 지급보증
5.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경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 매입업무
6.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업무
7. 상기 사업과 관련된 신용조사 또는 신용분석
8.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경영여신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리스채권의 매각, 취득 또는 대출참가
9. 전산관련업무
10. 자료분석 및 처리업무

11. 기타 관리업무
12. 상기 사업목적 달성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 및 투자
13. 부동산 임대업
14. 자동차 임대업
15. 기타관련사업
16. 전자금융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 3 조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 이전 또는 폐쇄될 수 있다.

제 4 조 통지의 방법

회사의 공고는 국문으로 발행되는 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제 5 조 외국인에 대한 통지 및 보고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의하여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신문공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발송해야 하는 모든 통지와 보고는 영문으로 행한다.

제 2 장 주 식

제 6 조 주식의 총수

-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수권주식"이라 한다)는 50,000,000주로 한다.
- (2) 회사가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및 액면가액

회사가 발행할 모든 주식은 주당 액면가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한종류로 한다.

제 8 조 신주발행

- (1) 회사는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2)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신주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 (3) 반대되는 여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주가 위와 같이 신주발행에 관하여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경우, 그가 그러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그 주주가 한국 정부로부터 필요한 인.허가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주 권

주권은 기명식주권으로 하되, 일(1)주권, 오(5)주권, 십(10)주권, 오십(50)주권, 백(100)주권, 오백(500)주권, 천(1,000)주권, 만(10,000)주권 및 십만(100,000)주권 단위로 발행한다.

제 10 조 주주명부

회사는 한국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주주명부를 비치한다.

제 11 조 명의개서 및 질권등록

- (1) 양도, 매매 또는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원하는 주주는 회사 소정의 신청서에 해당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양도, 매매 또는 기타 유사한 사유에 의한 주식의 이전이 아니라 유증, 상속,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를 개서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소정의 신청서에 해당주권 및 그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을 등록하거나 말소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 소정의 신청서에

해당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서류를 검토하여 주주명부에 이전 또는 질권설정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주권에 대표이사가 확인 날인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5) 주식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 12 조 주권의 재발행

- (1) 주식의 분할이나 병합 또는 주권의 손상이나 오손으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원하는 주주는 회사 소정의 신청서에 폐기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손상이나 오손의 정도가 극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교체에 관하여는 다음항을 적용한다.
- (2) 주권의 분실로 인하여 신주권의 발행을 원하는 주주는 분실된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이나 등본과 아울러 그에 대한 회사소정의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수수료

본 정관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명의개서 또는 주권의 재발행에 관하여 회사는 당해 절차 완료전이라도 이사회가 정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 14 조 주소 및 인감의 신고

- (1) 주주 및 그 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서명을 사용해 온 외국인은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는 그 이외에 한국 내에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주소나 대리인을 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 (3) 주주의 대리인은 회사에 그 대리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에 관한 어떠한 변경도 적절한 증명서나 증거의 제출에 의하여 회사에 신고되어야 한다.

- (4) 전 각항의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5) 회사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들은 제(1)항에서 신고된 인감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 (1)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회계년도 말일의 익일부터 당해 회계년도의 정기주주총회의 말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고, 또는 특정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간주할 수 있다.
- (2)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일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고, 또는 특정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러한 주식과 관련하여 위 제(1)항에 열거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간주할 수 있다.
- (3) 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및 기일 개시에 앞서 최소 2주전에 그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6 조 총회의 종류 및 개최

-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2종류로 한다.
- (2)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3)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와 한국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

제 17 조 총회의 소집

- (1) 모든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는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본점으로 한다.

- (2)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대표이사는 늦어도 회의예정일 3주전에 주주와 통지를 받아야 할 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위 기간은 회의 전에 회사의 모든 주주의 서면동의를 얻어 단축될 수 있다. 통지서에는 회의의 안건, 개회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는 출석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주주가 만장일치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회의통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결의할 수 없다.

제 18 조 의 장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불참하거나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하는 직무대행순서에 따라 잔여 이사중 1인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제 19 조 정족수 및 결의의 채택

- (1) 모든 주주총회의 의사 정족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 (2) 모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본 정관에서 더 많은 찬성투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로써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의결권

- (1) 각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각 주식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 (2) 주주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리권자는 그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각 주주총회마다 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그 주식을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분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위 주주가 타인 소유의 주식을 신탁이나 기타 다른 근거로 보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의결권을 분리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그러한 의도, 이유 및 그가 신탁이나 기타 근거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적어도 3일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1 조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휴회

주주총회에서는 연기 또는 휴회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연기 또는 휴회가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의 사 록

- (1) 주주총회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는 영어와 한국어로 된 의사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그 의사록은 의장과 회의에 출석한 이사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영문본과 국문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모든 의사록의 영문본이 우선한다.
- (2) 의사록 사본은 회의 후 30일 이내에 이를 요청한 모든 주주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외국주주에 대하여는 그들이 명시적으로 국문본 의사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영문본의 사본을 등기항공우편으로 송부한다.

제 4 장 이사 및 임원

제 23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사외이사 수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된다.

제 24 조 선 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결원의 경우 어떠한 주주총회에서도 충원될 수 있다.

제 24조의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5 조 이사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취임 승낙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하여 소집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연장된다.
- (2)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그의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6 조 대표이사 및 기타 이사

- (1)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1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2)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의 결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경영업무를 수행한다.
- (3) 이사회는 회사 운영에 필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이사를 선임한다.

제 27 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1)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2)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보 수

이사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채택된, 이사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9 조 이사회의 성격

- (1)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된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제 30 조 회의의 소집

- (1)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1인의 이사가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개최의 시간 및 장소는 이사회 의장이 정하고, 그 장소는 대한민국 내외로 한다.
- (2) 이사회 의장은 늦어도 회의예정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개별통지, 팩시밀리 또는 텔렉스의 방식으로 이사회 회의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동 통지에는 회의에서 심의될 의안을 상세하게 명기하고 회의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단, 위 기간은 회의 전에 이사 전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회의에서는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이사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전술한 의안에 기재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매년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장이 불참하거나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명한 이사, 이사회에서 정한 자의 순으로 잔여이사중 1인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제 32 조 정족수 및 결의의 채택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한 의사 정족수는 총 재직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법률이나 본 정관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사회는 모든 조치 및 결의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채택된다. 이사회는 개최 및 결의는 같은 장소에 현실적으로 집합하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통신장치를 통하여도 가능하다.

제 33 조 부의사항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a. 주주총회의 소집
- b. 영업보고서의 승인
- c. 감사보고서(재무제표)의 승인
- d. 정관의 변경
- e. 자본의 감소
- f.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g.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h.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j. 주식배당 결정
- k.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l. 이사의 보수
- m.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n. 신주 발행
- o.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나) 경영에 관한 사항

- a.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b.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c.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d.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e. 지점,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f.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a.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 b. 중요한 계약의 체결
- c.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라) 이사에 관한 사항

- a.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b.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의 승인

(마) 기타

- a.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다)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이사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마)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사)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 34 조 이사회 의사록

- (1) 이사회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는 영문과 국문으로 의사록에 기록하고, 그 회의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의 본점에 이를 비치한다. 영문 및 국문 의사록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본 의사록이 우선한다.
- (2) 의사록 사본은 회의 후 30일 이내에 이를 요청한 모든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그들이 명시적으로 국문 의사록을 함께 요청하지 않는 한, 영문본의 사본을 등기항공우편으로 송부한다.

제 35 조 위원회

- (1)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나) 감사위원회
 - (다) 위험관리위원회
 - (라) 보수위원회
 - (마) 내부통제위원회
 - (바)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 3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1)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결원의 경우 어떠한 주주총회에서도 충원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 37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6)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38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 39 조 회계년도

- (1) 회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2) 회사의 최초 회계년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도래하는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40 조 회계장부 및 기록

회사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1질의 완전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러한 회계장부는 그 양식 및 방법에 있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제 41 조 재무제표

- (1) 대표이사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에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라) 위 (가), (나)와 (다)에 대한 부속명세서; 및
 - (마) 영업보고서.
- (2) 감사위원회는 위 제(1)항에 기재된 서류를 수령한 후 4주 이내에 그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일 전부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와 제(1)항에 기재된 서류 등본들을 회사의 본점에는 5년간, 지점에는 3년간 각 비치하여야 한다.
- (4) 대표이사는 위 제(1)항 (가) 내지 (다)에 기재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제(1)항 (마)에 기재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5) 위 제(4)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익금의 처분

회계연도의 이익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제 43 조 배당금의 지급

- (1) 배당금은 매회계년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다.
- (2) 배당금은 그러한 배당금 승인을 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 (3) 배당금에 관한 청구권은 그 결정을 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 43조의 2 중간배당

- (1)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가)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나)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다)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라)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마)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바)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8 장 보 칙

제 44 조 규 정

회사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 45 조 상법의 적용

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또는 한국 상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 46 조 언 어

본 정관의 영문본과 국문본은 모두 정본이다. 단, 상호 모순되거나 의미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첨부 2] 지배구조 내부규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2022년 03월 31일

개정: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9월 27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이사회와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경영 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본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이란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의미한다.
3.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지배구조법」 제 17 조에 따라 선임되는 자를 의미한다.
4.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사회와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경영 승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 2 장 이사회의 구성

제 4 조 (구성)

- ① 이사회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의 수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사내이사는 1 인 이상으로 한다.
- ④ 사외이사는 3 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5 조 (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매년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자 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선임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가부동수시의 결정권(Casting Vote)을 갖지 않는다.
- ④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 이사회에서 정한 자의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회사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 ⑥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회사 및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 3 장 이사의 자격요건

제 6 조 (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① 사내이사는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 6 조 제 1 항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 ①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제 4 장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 8 조 (이사회 의 심의 ·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 ① 이사회는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기타 관련 사규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것과 기타 경영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 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회사 경영을 지원한다.
- ② 「상법」, 「여전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기타 관련 사규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것과 기타 경영상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9 조 (이사회 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결의 사항의 주요내용을 결정한 경우, 그 세부사항의 결정을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 책임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이사의 권한)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업무집행책임자로부터 독립하여 위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이사의 역할 및 책임)

- ①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주주이익보호 및 회사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업무집행책임자로부터 독립하여 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해태 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 ⑥ 제 5 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 포함)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한된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의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 회사는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를 보상한다.

제 12 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하여 요구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이사회 등의 회의자료를 1 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당일 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정관」 제 30 조 제 2 항에 따른 소집통지 생략 동의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② 사외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에 전문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제 5 장 이사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14 조 (이사 선임 절차)

- ① 이사 및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사내이사는 대주주(지배구조법상의 정의에 따름) 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한다.
- ③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면 해당 주주는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4.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에 한하여 의결권 제한)

⑤ 이사는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동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5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6 조 (이사의 퇴임)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
3. 「상법」, 「여전법」 및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관련 사규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의 발생
4. 해임

② 회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 및 관련 사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면 해당 주주는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4.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에 한하여 의결권 제한)

③ 회사는 이사의 퇴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 구성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사외이사의 퇴임 또는 사망으로 사외이사 로 이사회 과반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외이사가 3 인 미만이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개최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3 인 이상의 사외이사가 이사회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제 6 장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 17 조 (이사회 소집권자 및 소집 절차)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직권으로 또는 이사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 ②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는 이사는 요청 시 이사회 의장에게 회의일 · 회의장소 · 회의시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 소집 통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회사는 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재적이사 과반수 미만의 참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사회는 소집일로부터 3 영업일 이후에 다시 소집된다. 재 소집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 18 조 (이사의 소집 횟수) 이사회는 분기별로 1 회 이상 소집한다.

제 19 조 (이사회 의결권 행사방법 및 의결권 제한) 이사의 의결권 행사방법 및 제한은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20 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연 1 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이사의 역할 등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
- ② 제 1 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1 조 (사외이사의 평가)

-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이사회는 제 1 항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대해 결의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평가 기관에 의한 평가를 결의할 수 있다.

제 8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2 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이사회는 사외이사 아닌 자가 의장을 하는 경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위 이사회 내 위원회 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위원회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선임은 각 위원회 결의로 한다.
- ④ 이사회는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개정 권한을 특정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⑤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다. 회사는, 이사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한 위원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⑥ 이사회 내 위원회 소집 통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3 조 (사외이사회)

- ①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경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회는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로부터 독립하여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회사의 경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 ③ 사외이사회의 의장은 선임사외이사로 한다. 선임사외이사가 부재중이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가 지명한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사외이사회의 소집 통지는 이사회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
- ⑤ 사외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외이사가 직접 사외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외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⑥ 사외이사회는 재적사외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⑦ 사외이사회 의사록에는 검토 및 논의안건, 검토 및 논의내용을 기재하고 출석한 선임사외이사와 사외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 24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2. 대표이사,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관리 및 후보검증 결과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에 속하지 않은 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제안할 수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로부터 제안받은 자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가 제안한 자에 대한 면접(서면 면접 포함)을 진행할 수 있다.

⑥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후보 추천이 필요한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중에서만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⑦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위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 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의 3 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 중 1 명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은 다음 각호 중 1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서 10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 법률,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으로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실무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제 1 호 내지 제 4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 ④ 감사위원회 소집 통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⑤ 감사위원회는 매년 1 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하여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 등에서 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 26 조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3. 「리스크관리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 4.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관련 사규에서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사항 및 위험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으로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 27 조 (보수위원회) 보수위원회는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
- 2. 보수 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3.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관련 사규에서 보수위원회의 결의·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사항 및 보수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으로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28조 (내부통제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는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고시하는 사항

6)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9 조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위임 방법) 이사회는, 「정관」 제 33 조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해당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을 해당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 9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30 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연 1 회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참조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평가절차 및 방법 등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0 장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제 31 조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 요건)

- ①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 11 장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책임

제 32 조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 ①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이사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가 부여하는 직무에 따른 권한 및 전결권을 가진다. 단, 주요업무 집행책임자는 회사와의 관계를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장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33 조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 ① 회사는 현재 직급 및 직무, 경험, 지식, 실무경험,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집행 책임자 후보군을 선정한다.
-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제 1 항의 업무집행후보군 중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 ③ 업무집행책임자 임기는 해(사)임시까지로 한다.
- ④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동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업무집행책임자의 퇴임)

- ① 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
 3. 「상법」, 「여전법」 및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관련 사규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의 발생
 4. 해임
- ②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영성과가 타 업무집행책임자 보다 현저히 떨어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할 수 있다. 업무집행책임자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업무대행자 또는 후임자를 임명한다.

제 13 장 업무집행책임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 제도

제 35 조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

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의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 36 조 (업무집행책임자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 ① 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 후보자의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 후보자에 대한 교육결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집행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 14 장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 지급의 방법

제 37 조 (업무집행책임자의 성과평가)

- ①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업무집행책임자의 성과평가는 대표이사가 사내 규정 또는 기준이 정한 등급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③ 업무집행자에 대한 평가 결과는 보수의 지급, 재선임 또는 해임 시 등에 활용한다.

제 38 조(업무집행책임자의 보수 지급)

- ① 업무집행책임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 ② 성과급은 사내 규정 또는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 ③ 성과급은 3년 이상 이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연 지급 비율은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5 장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제 39 조(최고경영자 퇴임 및 경영승계 절차 등)

-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최고경영자는 퇴임하며,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된다. 단 임기만료 후 연임되는 경우, 제 1 호에 따른 경영승계절차는 개시되지 아니한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
 3. 「상법」, 「여전법」 및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관련 사규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의 발생
 4. 해임
 5. 제 40 조에 따른 비상 상황의 발생
- ② 회사는, 최고경영자가 법령 또는 「정관」 및 관련 사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최고경영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경영자를 해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절차의 개시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최고경영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선임 한다. 단, 이미 이사로 선임된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하는 경우, 경영승계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해당 절차는 제 3 항의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
 2.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

제 40 조 (비상상황)

- ① 최고경영자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의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사 2 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 41 조에 따라 승계절차를 진행한다. 이사의 동의는 구두, 문자 메시지,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 ② 제 1 항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직무대행자는 CFO로 한다.
- ③ 직무대행자는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이사회에 다른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16 장 최고경영자 승계 지원부서 등

제 41조 (지원부서) 최고경영자 승계 지원 부서는 인사부서에서 담당하며, 동 팀은 최고경영자 승계 지원 관련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발생하는 모든 업무 지원

제 17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 42 조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최고경영자가 될 수 없다.

제 43 조 (적극적 자격요건)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1.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에 부서장 이상의 지위로 5 년 이상 근무한 자일 것
2.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 년 이상 활동한 자일 것
3. 1 호, 2 호 외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제 18 장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

제 44 조(후보자 선정 및 관리)

- ① 최고경영자 후보군(이하 후보군)은 연 1 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선정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검토 시,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의 적정성도 함께 검

토한다.

- ② 지원 부서는 자격심사 및 평판 조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후보군을 관리한다.
- ③ 지원 부서는 연 1 회 이상 제 2 항의 후보군 관리현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 하고, 승인을 받는다.
- ④ 제 1 항의 후보군은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 19 장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 45 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회사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한 제 39 조 제 4 항에 따른 주주총회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다음 사항의 공시 사실 및 공시 확인 방법을 함께 통지한다. 단, 기존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한 제 39 조 제 4 항에 따른 이사회 20 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시하고, 이사회 소집 통지 시 다음 사항의 공시 사실 및 공시 내용을 통지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 추천 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 20 장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 46 조 (최고경영자의 임기 등)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르며,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제 47 조 (최고경영자의 역할 등)

-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통제의 기능
 2. 주요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회사의 수익과 성장의 최대화
 3. 법, 규정 및 사회적 의무의 성실 이행
 4. 회사 내규에서 정한 직무의 성실 이행
 5.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 육성을 위한 노력
- ② 최고경영자의 권한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책임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 48 조 (최고경영자의 평가기준 등) 최고경영자의 평가는 회사의 성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성과급은 사내 규정 또는 기준을 준용한다.

제 21 장 제정 및 개폐

제 49 조 (제정 및 개폐) 규범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 단순한 용어 변경 등 내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0 조 (공시) 회사는 법 제 14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이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정 또는 변경일로 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첨부 3] 이사회 규정

이사회 규정

제정: 2015.10.01

개정: 2016.09.23, 2017.07.01, 2022.03.30,
2022.09.30, 2024.06.20, 2024.09.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이사회규정("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준수(이하 "법"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및 임기)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기준 총자산의 규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사외이사 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정관에 따라 그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하여 소집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연장된다.

제5조(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②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바대로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마다 개최한다.
- ④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정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관련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표결 요건이 강화될 수도 있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 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감사보고서(재무제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8)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0) 주식배당 결정
-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2) 이사의 보수
- (13)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보고
- (14) 신주 발행
- (15)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3)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5) 지점,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6)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의 승인

5. 기 타

(1)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③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8.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④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의 2/3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1명 이상을 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
- ⑤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5조(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② 이사회는 간사를 지명하고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 (이사회 지원) 회사는 Compliance부서가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도록 한다.

[첨부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2018.09.13

개정: 2020.04.30, 2022.09.22, 2024.06.20

2024.09.26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1. 목적

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내규(이하 "규정")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준수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권한

3-1.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총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원회는 임원(사내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후보를 추천한다.

3-2.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3-3.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구성

4-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2.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4-3.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5. 위원장

5-1.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5-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5-3.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외이사 내 다른 위원, 혹은 해당 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사외이사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회의의 종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7.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7-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2.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7-3.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결의방법

8-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8-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8-3.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의사록

9-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9-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0. 임원후보의 자격요건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경우 그 자격여건의 검증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붙임1] 임원 선임 심사표의 요건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한다.

11. 개정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2. 연혁

2018.09.13 제정

2020.03.27 1차 개정

2022.09.22 2차 개정

2024.06.20 3차 개정

2024.09.26 4차 개정

[붙임 1]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p>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p>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p>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성 명		직 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사외이사 해당사항>			
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p>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p>		
<p>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p>		
<p>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p>		
<p>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p>		
<p>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p>		



<p>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p> <p>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p>		
<p>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p> <p>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p> <p>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p> <p>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정후기업의 임직원</p>		
<p>Ⅲ.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p>		

성 명	직 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해당사항>		
IV.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		
성 명		직 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사람 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임직원		



성 명		직 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p> <p>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p>			
<p>종 합 의 견</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임원 ○○○ (인)/signature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대표이사 제임스 오스키 (인)</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2.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3. 소속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5. 외국인의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6.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7.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첨부 5]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2017.03.27

개정: 2018.12.04, 2019.09.01, 2021.09.09, 2024.02.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평가 및 선임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수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구성

제8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회사는 아래의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이사회 규정 등 내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1의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변호사, 회계사, 공인감사인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10년 이상 금융업무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상기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9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권한위임)

- ①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② 일상감사사항 등 20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사부서의 부서장에 위임된 사항은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정기 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3장 회의

제11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 당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소집절차)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 3항을 준용한다.
- ②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부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결의사항**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마.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 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감사계획의 수립
-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 다. 외부감사인의 선임의 승인
- 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사.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4. 기타

-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 라.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사항

1.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다.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 라.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 마.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 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이사회에 보고

2. 기타

-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

제1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해당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면회의를 개최 하여야 하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제13조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대면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발언내용 등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⑤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해산 등 외감법 시행령 제13조2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외부감사인의 해임)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외감법 시행령 19조 및 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로부터 해임을 요청 받은 외부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전기외부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회사는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행한 외부감사인 (이하 "전기외부감사인") 외의 다른 외부감사인을 새로 선정하거나 외감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을 해임요청하려면 새로운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2주전까지 문서로 전기외부감사인에게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전기외부감사인이 ①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전기외부감사인의 의견과 해임한 사유를 확인하고 회사는 감사위원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문서와 함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 및 보고

제20조(감사부서 부서장의 위임)

-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부서의 부서장에게 위임하며,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기타 감사업무수행(e.g. 감사보고서의 발행 및 회람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부서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21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제20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이외에 중요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의 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보조조직)

- ①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이하 "감사부")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이하 "감사부")을 둔다.

제24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일)

이 변경된 규정은 2018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일)

이 변경된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일)

이 변경된 규정은 2021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일)

이 변경된 규정은 2024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6] 위험관리기준(위험관리위원회규정)

위험관리기준

제정: 2022년 07월 27일

개정: 2024년 06월 20일

제1조 (위험관리 기본방침)

1.1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이후 BMW FSK라고 한다) 는 위험관리를 통하여 회사의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고객과의 건전한 거래를 통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1.2 이 위험관리기준(이후 기준이라고 한다) 은 회사가 BMW FSK 위험 전략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2.1 이 기준은 거래의 대상, 형태 등을 불문하고 회사에 손익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일체의 활동, 여신사업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2.2 회사의 위험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정관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3 이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에 명시된 세부적인 사항 포함)은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위험관리위원회

3.1 회사는 위험관리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위험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며,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총 4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있다. 그 4명은 3명의 사회이사와 1명의 내부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3명의 사회이사 중 한 명이 하여야 한다.

3.3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이외의 임직원을 출석시

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4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 2)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 3) 적정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 5)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의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 6) 개인과 법인 고객에게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고 관리
- 7) 위험관리 규정 및 사내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필요한 조치

3.5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전원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6 위원회는 투자자재산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점검, 평가 및 검토에 대한 업무는 위험관리부서에 위임한다.

3.7 위원회는 매 분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8 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의결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4조 (기준의 변경)

4.1 이 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는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의 및 승인 후 BMW FSK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다.

4.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 변경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의 변경은 위험위험관리책임자의 승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리대상 위험)

5.1 이 기준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위험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신용 및 거래 상대방 채무 불이행 위험: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말한다.
- 2) 시장가격 위험:
 - 2-1) 잔존 가치 위험: 차량의 미래 잔존 가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위험을 말한다.

- 2-2) 이자율 위험: 시장 이자율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위험을 말한다.
- 3) 운영위험: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업무프로세스,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4) 기타위험: 전략적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비즈니스 전략의 목적 및 그에 대한 위험 전략을 모니터링 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5.2 제1항의 관리대상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및 제반 절차는 위험 식별, 위험 측정·평가, 위험 한도 배분, 그리고 위험 모니터링 및 보고가 있다. 다음 각 호는 세부 사항 이다.

- 1) 위험 식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 1-1) 모든 부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위험요인을 인식한다. 적절한 형식을 통하여 위험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1-2) 위험관리부서는 사업부서와 독립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위험요인을 인식한다. 필요시 사업부서와 협의 하여 위험요인을 확정할 수 있다.
- 2) 위험 측정·평가: 위험 측정방법을 정하여 위험 규모를 측정하고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2-1) 위험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측정·평가 되어야 한다.
 - 2-2) 측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3) 위험 한도 배분: 위험 통제를 위해서 적정 수준으로 각종 한도를 배분한다. 위험관리부서는 위험한도를 통하여 사업부서가 적절한 위험을 부담하도록 통제 하여야 한다.
- 4) 위험 모니터링 및 보고: 위험관리부서는 위험 수준 및 허용한도 준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 4-1) 위험 모니터링은 사업부서, 위험관리부서 및 내부감사부서를 통한 3단계 감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4-2) 위험관리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경영진은 보

고사함에 대하여 위험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3) 회사는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주보호 및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무관리회사의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다.

4-4) 위험관리정보와 보고과정의 1차적 책임은 해당 업무의 부서가 담당하며, 그 부서는 위험관리정보와 보고 절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5) 위험 통제

5-1) 각 부서는 설정된 위험한도 범위 내에서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도초과시 또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5-2) 위험관리담당부서는 각 부서의 관련 위험에 대한 적정성 관리를 점검한다.

5-3) 위험관리담당부서는 적절한 위험관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 관련 업무절차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5-4) 위험관리책임자는 외부 정보인 금리·환율 등의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를 위험한도의 조정 등 위험 관리에 반영한다.

제6조 (위험관리 대상)

이 기준에 의한 위험관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각의 관리대상 위험은 제4조에서 정한 위험측면에서 관리토록 한다.

- 1) 리테일 금융
- 2) 상업 금융
- 3) 기타 회사운영 전반에 걸친 위험 요소

제7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7.1 위험관리책임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천한 후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7.2 위험관리책임자는 하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않으며, 하기 사항의 결의를 위해서는 이사회 2/3 이상의 해임 동의가 필요하다:

- 1) 위험관리책임자가 관련 법령 또는 내부 해임 규칙에 의거하여 해임되어야 할 경우; 혹은
 - 2) 위험관리 책임자가 위험관리 책임자로서 그의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경우들.
- 7.3 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명하면,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임명을 금융감독원(이하 'FSS')에 보고하여야 한다.
- 7.4 위험관리책임자의 지위 및 임기: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사회에서 임기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 3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재선임될 수 있다.

제8조 (위험관리부서)

8.1 BMW FSK는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위험관리 기준 수립, 통제 및 보고를 전담하는 위험관리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8.2 위험관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사의 위험관리 정책, 가이드라인, 지침서 작성 및 관리
- 2) 전사 위험 모니터링 및 주요 현안 분석
- 3) 위험 정보와 보고 절차 관리
- 4) 신규사업 위험 점검
- 5) 기타 위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 받은 업무

8.3 위험관리부서는 영업 및 운영업무 부서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8.4 위험관리부서는 위험의 종류를 잔존 가치 위험, 이자율 위험, 운영 위험, 신용 및 거래 상대방 채무 불이행 위험으로 분장한다. 각 위험을 위험관리부서원이 담당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제9조 (경영진 보고)

9.1 위험관리부서는 회사의 영업활동 규모가 한도 이내로 관리되는지 모니터링 하여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9.2 이외에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험관리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험관리부서는 이를 즉시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한도의 설정 및 관리)

10.1 회사는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의 범위 내에서 위험을 관리한다.

10.2 위험관리부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측정하고 적절한 수준의 한도를 설정하며, 위험 종류별로 한도를 부여한다.

10.3 위험관리부서는 주기적으로 한도 초과 여부를 모니터링 하여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한다.

10.4 한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11.1 위험관리부서는 유동성의 감소,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악화, 결제자금수요의 증가, 시스템 장애 등의 우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 위기처리방안은 우발상황 발생시의 자금조달방안, 신용보강계획, 시스템 장애의 복구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1.3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등 우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부서장 및 위험관리책임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산의 평가 및 잠재적 영향)

12.1 자산의 평가는 공정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상품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시하는 공정가치를 준용하고, 이외의 자산은 장부가액을 준용한다.

12.2 1항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장부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금융상품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부서가 그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다.

12.3 위험관리부서는 보유한 자산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 한다.

제13조 (부외거래의 기록 유지)

BMW FSK는 부외거래 기록이 없다. 하지만, 만약 부외거래를 하는 경우 BMW FSK는 거래담당부서로 하여금 동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직원의 위험관리 절차)

14.1 BMW FSK는 효과적인 위험 관리 방법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고, 준수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14.2 BMW FSK의 전체 임직원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위험관리와 관련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인지해야 한다.

14.3 새로운 제품이나 위험과 관련된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는 그전에 위험 검토를 해야 한다.

14.4 BMW FSK의 위험 관리는 규제 당국의 요구사항을 따르는데, 특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가이드 원칙으로 삼는다.

제15조 (내부통제)

15.1 BMW FSK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위험을 적절하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위험관리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5.2 위험관리부서는 이 기준 및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경영진에 보고하고 준법감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5.3 법규준수위험의 관리는 준법지원부서에서 주관하여 관리한다.

15.4 회사는 신상품 개발, 계약체결 및 각종 법률 문서 작성 등에 대하여 준법지원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준위반시의 조치)

16.1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이 기준 및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제 62조 (징계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경고
- 2) 감급
- 3) 정직
- 4) 강직
- 5) 징계해고

16.2 위험관리부서는 이 기준 및 지침 등을 위반한 거래(결제)담당부서장(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의 절차가 준용된다.

[첨부 7] 보수위원회 규정

보수위원회 규정

제정: 2022.03.24

개정: 2024.06.20

1. 목적

본 보수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은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단,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3. 적용범위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구성

4-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4-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4-3.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4-5. 위원장이 부재시나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6.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임기에 따르며, 법령이나 정관,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

5. 권한 및 역할

5-1. 위원회는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2)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3)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등 금융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고시하는 사항
- 6)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2. 위원회는 5-1.에서 규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5-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4.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6.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6-1. 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6-2.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

일 전까지 서면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3.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결의방법

7-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7-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7-3.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4.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5-4.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통지 받은 이사가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8. 의사록

8-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8-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제/개정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0. 연혁

2022. 3. 24. 제정

2024. 6. 20. 개정

[첨부 8]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제정: 2024.09.26

1. 목적

본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의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임원'은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단,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3. 적용범위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구성

4-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4-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4-3.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4-5. 위원장이 부재시나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6.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임기에 따르며, 법령이나 정관,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

5. 권한 및 역할

5-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고시하는 사항
- 6)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2. 위원회는 5-1.에서 규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사의 임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30 조의 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및 제 30 조의 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4.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6.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6-1. 회의는 위원장이 연 1 회 이상 소집한다.

6-2.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 일 전까지 서면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3.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결의방법

7-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7-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7-3.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4.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5-4.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통지 받은 이사가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8. 의사록

8-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8-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제/개정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0. 연혁

2024. 9. 26. 제정

[첨부 9] 중임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 보고서

중임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 보고서-정요진 (현)사외이사

중임사외이사 후보: 정요진 (현)사외이사

1.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역할과 관련된 경험

- 한화자산운용(주) 사외이사(2016.03 ~ 2021.03)

2. 회사에 대한 이사회 등에 대한 기여

- 이사회 및 소속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및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안건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요청 및 질의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 및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3. 이사회 등 참여 내역(2021.09 ~ 2024.09)

회의	개최횟수	참여횟수	참여율	비고
이사회	29	29	100%	
감사위원회	20	20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13	13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8	8	100%	
보수위원회	8	8	100%	

4. 내부평가 등 연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질과 능력

정요진 사외이사는 현재 서울기독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회사들의 경영상황을 감시하고 회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지원함과 동시에 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요진 사외이사는 연임 시 회사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대상기간에 발생한 회사의 주요 이슈사항과 관련된 활동 및 책임

정요진 사외이사는 재직기간 중에 자본 증자, ABS 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 안건을 승인함. 정요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에 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견을 제시함.

6. 기타

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서명으로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상의 위원장 서명을 갈음함.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임건신 (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제임스 오스키 (인)

